

---

# 2018년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.운영 참여기관 파트너 협약서

---

본 협약서는 2018년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및 운영 사업의 준비와 참여에 대해 (재)한국플랜트건설연구원, 서울교육대학교 간의 창업프로그램개발, 정보공유, 인력양성, 취업 및 창업 지원, 각종 이벤트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협약하기로 한다.

## 제1조 【목 적】

본 협약서는 “한국플랜트건설연구원”, “서울교육대학교”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2018년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.운영에 대한 사업 준비와 추진에 있어서 상호간에 창업프로그램 개발과 정보공유, 인력양성, 취업지원, 창업지원 및 각종 이벤트사업 등 플랫폼 사업의 확대에 국가정책에 따른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## 제2조 【상호 협력 사항】

협의 당사자들은 본 협약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 대하여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 한다.

- ① 정부의 4차산업 혁명의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프로그램의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에 대한 상호 협력
- ② 산업체의 Needs를 충족하는 인재양성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정보교류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협력
- ③ 각종 세미나와 컨퍼런스 진행시 장소 제공 등 상호 협력
- ④ 양성된 회원들의 진로개발과 취업정보, 창업컨설팅에 관련한 정보 교류
- ⑤ 신규연구과제 개발 및 교육과정 발굴에 대한 상호 협력
- ⑥ 각종 전시회 참석 및 이벤트 행사 진행 시 상호 협력
- ⑦ 기타 필요한 분야의 사업 및 교육에 대한 협력

## 제3조 【신의 및 비밀유지】

- ① 합의 당사자들은 양 기관의 품위와 명예를 존중하며 본 협약사항을 신의를 가지고 성실히 이행한다.
- ② 합의 당사자들은 본 협약서의 이행을 통해 획득한 상대방의 정보나 비밀사항을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.

#### 제4조 【유효기간】

- ① 본 협약서는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효력발생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.
- ② 본 협약서는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본 협약서의 종료 또는 변경에 관한 서면통보가 없는 한,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

#### 제5조 【변경 및 해지】





- ① 본 협약서의 중요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기관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- ② 협약기간 중 불가피한 사유로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상대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한 뒤 동의를 구할 수 있다.
- ③ 협약기간 중 상대기관의 명예와 위신을 심히 손상시킨 경우는 서면으로 통보하고 협약 또는 교육기관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.

#### 제6조 【해 석】

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기관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한다.

각 당사자는 본 협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기명날인 또는 서명 후, 원본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8년 04월 23일

<p>(재)한국플랜트건설연구원  (재)한국플랜트건설연구원 Korea Construction Institute of Plant</p> <p>원 장 김 영 건  (인)</p>	<p>서울교육대학교 </p> <p>총 장 김 경 성  (인)</p>
---	---